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8. 25.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6호
----------	-------

제출연월일 : 2020. 8. 2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6. 16. ~ 2020. 7. 6.(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출산보육정책과(041-635-4547)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4개월 미만의 사람”을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24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사람 중 만 36개월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배 자
	아동보육친화담당	임 수 경
	담 당 자	이 정 진 (746-535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u>24개월</u> <u>미만의 사람</u>을 말한다.</p> <p>2.~3.(생략)</p>	<p>제2조(정의)</p> <p>1. -----<u>36개월</u> <u>미만의 아동</u> -----.</p> <p>2.~3.(현행과 같음)</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수당지급)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논산시 거주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수당지급

나. 추계결과

- 2020년 행복키움수당 지원 : 1,683,800천원
 - 100천원 × 16,838명 = 1,683,800천원

계	지급인원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2020.6	2020.7	2020.8	2020.9	2020.10	2020.11	2020.12
16,838	1,286	1,287	1,287	1,289	1,290	1,293	1,296	1,296	1,296	1,296	1,961	1,961

3.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김 배 자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4차 년도 (2023년)	5차 년도 (2024년)	계
세	입	1,683,800	2,344,000	2,344,000	2,344,000	2,344,000	11,059,800
도	비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1,172,000	5,529,900
시	비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1,172,000	5,529,900
세	출	1,683,800	2,344,000	2,344,000	2,344,000	2,344,000	11,059,800
사무관리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1,172,000	5,529,900
	도 비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1,172,000	5,529,900
자체 수입	소 계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1,172,000	5,529,900
	지방세	841,900	1,172,000	1,172,000	1,172,000	1,172,000	5,529,90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근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도지사(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